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 방위사업청장이 효과적인 국방반도체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 현황, 국내외 공급망 및 기업 경쟁력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공급망 및 생산능력, 재고현황 등을 관리하고 민간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방반도체 소재·공정·패키징 개발, 국방반도체 설계,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변경, 국방반도체 개발·이전·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고(안 제15조), 국방반도체사업자 중에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II. 검토의견

1. 입법취지를 고려한 규정 보완(안 제16조제6항)

제정안 제16조6항은 방위사업청장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방위사업청장은 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¹⁾

1) **안 제16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① 국방반도체사업자 중에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장은 대상기관에게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위한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는 판단과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는 판단 등의 업무 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안 제16조제6항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① ~ ⑤ (생략)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① ~ ⑤ (제정안과 같음) ⑥ ----- -----업무에 대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실태조사,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u>원장에게</u> -----. ⑦ (제정안과 같음)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